서울특별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1358

2013년 7월 5일
교 육 위 원 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3년 6월 13일, 서울특별시교육감

나. 회부일자 : 2013년 6월 18일

다. 상정일자 : 제247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5차 교육위원회 (2013년 7월 5일 상정, 수정안 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기획조정실장 이승복)

가. 제안이유

○ 교육전문직원 지방직화(2013. 6.12)에 따라 교육감의 권한을 교육장 및 직속기관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가. 교육장 위임 사항으로 “소속 장학사의 근무부서 지정 및 보직 부여” 신설 (안 제5조)

나. 직속기관장 위임 사항으로 “소속 교육전문직원의 호봉 재획정” 신설 및 “교육연구사의 보직부여” 추가(안 제7조)

다.「사무관리규정」이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개정됨에 따라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법률용어 변경사항 반영 (안 제4조, 제5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이연주)

○ **대통령령 제명 변경의 반영(안 제4조)**

- 안 제4조는 상위법령인 「사무관리규정」이 2011. 12. 21.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제명이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명변경의 이유는 종전의 문서 관리 위주의 규정에서 시스템 등을 이용한 기관 간 업무협조, 지식행정, 영상회의의 활성화 등 최근 변화하는 업무수행 방식을 반영하기 위해서임.

○ **교육감의 교육전문직원에 대한 권한사항의 근거법규 변경(안 제5조제3호의2 및 제4호, 안 제7조제4호의2 및 제6호)**

- 「서울특별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규칙」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중앙정부의 권한을 위임받은 교육감이 하급기관에 권한을 재위임하는 사항에 대한 규정이고, 「서울특별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는 교육감 본래의 권한을 하급기관에 위임하는 사항에 관한 규정임. 「교육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등의 개정에 따라 국가직이던 교육전문직원이 지방직화되면서 교육감 소속 교육전문직원의 임용권자가 대통령 또는 교육부장관에서 교육감으로 변동됨. 동 조례안은 임용권 변동에 따른 권한과 그 위임사항을 반영하여 교육전문직원에 대한 권한위임사항의 근거법규를 규칙에서 조례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임.

○ **근무부서 지정 및 보직부여 권한의 교육장에의 위임(안 제5조제3호의2 및 제4호)**

- 안 제5조제3호의2 및 제4호의 경우, 「서울특별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규칙」제5조에서 각각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다음과 같이 조례로 그 근거를 옮기고자 하는 것임. 즉, '소속 장학사의 근무부서 지정 및 보직부여'를 신설하여 교육감의 권한을 교육장에게 위임하고, '당해 지역교육청 소속 지방공무원의 겸직허가' 말미에 '교육장 제외'를 명시적으로 새로이 규정하여 교육감의 교육전문직원을 포함한 지방공무원에 대한 겸직허가 권한을 교육장에게 위임하려는 것임. 교육전문직원의 임용권 변동에 따른 적절한 입법조치라고 판단됨.

○ **호봉 재획정 및 보직부여 권한의 직속기관장에의 위임(안 제7조제4호의2 및 6호)**

- 안 제7조제4호의2 및 제6호의 경우도 같은 규칙 제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조례에 관련 내용의 신설 및 수정을 통해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즉, 교육감이 직속기관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으로 '소속 교육전문직원의 호봉 재획정'을 신설하여 교육연구관·교육연구사의 호봉 재획정은 직속기관장에게 모두 위임하고, 교육연구사의 보직부여를 추가하여 '6급이하 지방공무원 및 교육연구사의 보직부여'로 개정하였음.

- 조례 제5조제1호의 '호봉획정'에는 초임호봉의 획정이 제외되어 있음에도 포괄적인 개념으로서 '호봉획정'을 사용하고 있고 교육전문직원의 경우 '호봉 재획정'이라는 단위개념을 채용하고 있어 그 의미가 분명하게 구분되지 않고 있는 점[1], 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소속 공무원에 대한 호봉획정의 권한과 비교했을 때 직속기관장에게 위임하는 소속 공무원에 대한 호봉획정의 권한이 일반직·기능직 공무원과 교육전문직원에 대해 달리 규정되어 있는 점 등

---

1) 서울특별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5조(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1. 소속 지방공무원의 정기승급 및 호봉획정
☞ 여기서의 호봉획정은 지방공무원(일반직, 기능직)의 호봉 재획정, 승진시의 호봉획정, 강임·강등시의 호봉획정 권한과 지방공무원(특정직-교육전문직원)의 경우 호봉 재획정을 포함하는 의미임. 지방공무원(일반직, 기능직)의 초임호봉획정은 교육감의 권한으로 하고 있음.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상 호봉획정, 승급, 호봉의 정정

호봉획정	승급	호봉의 정정
① 초임호봉의 획정 ② 호봉의 재획정 ③ 승진시의 호봉획정 ④ 강임·강등시의 호봉획정	① 정기승급 ② 특별승급	호봉의 획정 또는 승급이 잘못된 때

을 고려할 때, 교육전문직원의 호봉책정을 조례안처럼 '호봉 재획정'으로 규정짓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직속기관장에게 위임하는 권한이 일관성과 체계성을 갖출 수 있도록 재정비될 필요성이 있음.

○ **'잡종재산'의 '일반재산'으로의 변경(안 제5조제29호)**

- 2009. 4. 27.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개정으로 공유재산의 분류체계가 바뀌었는바, 기존에 행정재산, 보존재산, 잡종재산으로 분류되던 것을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보존재산을 행정재산으로 통합하면서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분류체계를 단순화하게 됨. '잡종재산'이라는 용어는 쓸모없는 자산이라는 부정적 이미지가 있어 이러한 부정적 이미지를 없애기 위해 '일반재산'으로 용어를 변경하였음.

- 상위법 개정에 맞춘 적절한 개정이나, 상위법 개정이 2009. 1. 30.에 이루어진 것에 비해 4년이나 지난 후의 때늦은 개정이라 할 것임. 조례를 입법하는 지방교육행정기관으로서 상위법의 개정추이를 항상 모니터링하여 각종 법규의 개정시기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유념해야 할 것임.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 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구성하지 않았음.

7. 수정안의 요지

○ 교육감의 지방공무원 정기승급에 대한 권한뿐만 아니라 새로이 호봉획정에 대한 권한까지 직속기관장에게 위임하고, 직속기관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중 소속 교육전문직원의 호봉 재획정 규정을 삭제함(안 제7조제4호 및 제7조제4호의2).

8. 심사결과 : 수정안 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1358

제안년월일 : 2013년 7월 5일
제 안 자 : 교 육 위 원 장

1. 수정이유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제6조에 따라 교육감의 지방공무원의 정기승급에 대한 권한뿐만 아니라 새로이 호봉획정에 대한 권한까지 일괄하여 직속기관장에게 위임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 현재 교육감의 지방공무원의 정기승급에 대한 권한을 직속기관장에게 위임하고 있는바, 이 권한뿐만 아니라 새로이 호봉획정에 대한 권한까지 일괄하여 위임함(안 제7조제4호).

○ 직속기관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중 소속 교육전문직원의 호봉 재획정 규정을 삭제함(안 제7조제4호의2).

3. 참고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7조제4호 “소속 지방공무원의 정기승급”을 “소속 지방공무원의 정기승급 및 호봉획정”으로 한다.

안 제7조제4호의2를 삭제한다.

수정안 대비표

현행	개정안	수정안
제7조**(기타 소속기관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생략)	제7조**(직속기관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현행과 같음)	제7조(직속기관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개정안과 같음)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1. ~ 3. (개정안과 같음)
4. 소속 지방공무원의 **정기승급**	4. (현행과 같음)	4..... **정기승급 및 호봉획정**
<신설>	**4의2. 소속 교육전문직원의 호봉 재획정**	**<삭제>**
5. (생략)	5. (현행과 같음)	5. (개정안과 같음)
6. 6급이하 **지방공무원**의 보직 부여	6. 6급이하 **지방공무원 및 교육연구사**의 보직 부여	6. (개정안과 같음)
7. ~ 14. (생략)	7. ~ 14. (현행과 같음)	7. ~ 14. (개정안과 같음)

서울특별시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사무관리규정」제13조”를“「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제13조”로 한다.

제5조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소속 장학사의 근무부서 지정 및 보직 부여

제5조제4호 중 “겸직허가”를 “겸직허가(교육장 제외)”로 하고, 같은 조 제29호 중 “잡종재산”을 “일반재산”으로 한다.

제7조의 제목 “(기타 소속기관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을 “(직속기관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소속 지방공무원의 정기승급 및 호봉획정

제7조제6호 중 “지방공무원”을 “지방공무원 및 교육연구사”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명의표시)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사무관리규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명의표시) **위임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할 때에는「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
제5조(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생략)	제5조(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현행과 같음)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신설>	**3의2. 소속 장학사의 근무부서 지정 및 보직 부여**
4. 당해 지역교육청 소속 지방공무원의 **겸직허가**	4..... ..... **겸직허가(교육장 제외)**
5. ~ 28. (생략)	5. ~ 28. (현행과 같음)
29. 소관 **잡종재산**의 관리 및 처분	29.....**일반재산**.....
30. ~ 33. (생략)	30. ~ 33. (현행과 같음)
제7조(**기타 소속기관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생략)	제7조(**직속기관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현행과 같음)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4. 소속 지방공무원의 **정기승급**	4.....**정기승급 및 호봉획정**
5. (생략)	5. (현행과 같음)
6. 6급이하 **지방공무원**의 보직 부여	6.....**지방공무원 및 교육연구사**.....
7. ~ 14. (생략)	7. ~ 14. (현행과 같음)